제2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0的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」 檢 計 報 告 書

【오현숙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1. 8. 31.

行政委員會 專門委員金玉然

(서울특별시 영등포구)的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」 檢討報告書

1. 경 과

의안 제367호로 2021년 7월 13일 오현숙의원 외 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주민 누구나 이용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장소. 설치기준(안 제5조 ~ 제6조)
- 다. 관리주체 및 안내문 게시·부착(안 제7조 ~ 제8조)
- 라. 안전점검. 관리대장의 작성·관리(안 제9조 ~ 제10조)
- 마. 영조물배상공제 등록(안 제11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1)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제4조
 - 2)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조, 제8조, 제13조
- 나. 예산조치: 필요시 반영
- 다. 협의사항: 문화체육과 협의 완료
- 라. 입법예고(2021. 7. 16. ~ 7. 20./ 5일 간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총 12개의 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됨.
-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 2019. 7. 15.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도개선 과제 중 조례의 제·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지방 의회에 제안·권고한 바 있는데, 여기에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 개선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.

□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개선방안 (7페이지)

- 체육시설 관련 조례의 적용 대상에 야외 운동기구를 포함하고, 관리기준 구체화를 위한 세부지침 마련
- 야외 운동기구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피해 보상을 위해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의무규정 신설
 - ⇒ 「지자체별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」에 반영

○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1조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,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였음.
-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공원, 하천, 산책로 등 공공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,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함.
- 안 제7조, 제8조는 관리주체 및 안내문 게시 규정으로 야외운동 기구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되고,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 기구에 별표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·부착하여야 함.
- 안 제9조, 제10조는 안전점검 및 관리대장의 작성·관리에 관한 사항으로,
 -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,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·점검 실시, 야외운동기구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관리대장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점검결과 및 관리대장 작성결과를 통보하여야 함.
- 안 제11조는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 보상을 위해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되었으며,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「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개선방안」을 충실히 반영한 안건임.
- 종전에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운영은 각각의 관리부서 주관으로 이루어져 왔으나, 본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 관리부서와 총괄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, 야외운동기구의 관리대장 작성, 안내판 부착 및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신청 의무화 등을 조례에 명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.
- 또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원, 하천, 산책로 등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타당하게 제출된 안건으로 사료됨.

<u>참 고 자 료</u>

1 체육시설의 설치 · 이용에 관한 법률

-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·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,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런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체육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·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·관리를 하여야 한다.

2 국민체육진흥법

- 제8조(지방 체육의 진흥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
 - ② ~ ③ 생략
- 제13조(체육시설의 설치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 - ② ~ ⑤ 생략